

전 영 철

본 협회 법제위원장

by Jeon Young-cheol, KIRA

#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After the National Assembly  
Symposium for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Culture Promotion

2006년 3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때는 뿌듯한 심정이었다. 국회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외침을 할 수 있었다니……. 더구나 국회 박희태 부의장과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원회 의장,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원회 의장, 이호웅 건설교통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분들의 축사를 들으며 건축의 중요성과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묵은 숙제를 해결한 듯 한 그런 후련한 심정이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005년 11월에 지인을 통해 황우여 국회의원을 소개 받았고 황의원께서는 “네모형태 위주의 국내 건축물들에 대한 해법이 없을까?”하는 의문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는 의지로 필자와 만난 것이 바로 국회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황우여 의원이 국회의 교육위원장이므로 교육위원회와 관련 있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떠 올렸으며 학교건축물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과 B.T.L로 발주되는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이는 건축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일 뿐 이라는 판단이 되었다.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건축에 대한 올바른 교육내용의 부족,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과 건축설계도서의 보호, 건축을 기술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편향된 시책, 훌륭한 건축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발주방식 등등 많은 건축의 문제점들이 필자의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이는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쪽의 보고서로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재미있게도 국회의원에게 비싼 점심을 얻어먹으며 건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자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해법으로 '건축문화진흥법'의 입법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황우여 의원께서 건축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는 분이었기에 입법 제안에 대하여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으며 제안을 했다는 죄로 필자가 법안 초안 작성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사실 '건축문화진흥법'이라는 용어는 협회내의 정책개발 T.F. 팀이나 법제위원회에서 건축의 문제점들에 대한 토의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법안 작성은 무척이나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다. 더구나 법안의 일부개정도 아닌 제정이었으니 그 부담감은 예상외로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건축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한 입법초안이라도 있어야 황우여 의원께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입법 발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고생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건축문화 진흥법안의 내용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제정법이며 건축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모르는 의원 보좌관에게 법안 초안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안의 초안 작성 숙제는 필자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의 초안은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법안을 받아본 황우여 의원으로부터 좋은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입법발의에 필요한 최종 법안작성을 위하여 법제심의, 검토와 법안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선포라는 의미를 함께 두자는 의도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론회의 날짜를 급하게 잡게 되었다.

발제자, 토론자, 좌장, 사회자의 선정과 섭외를 비롯하여 예산편성, 초대장과 행사 자료집의 인쇄, 그에 따르는 원고마감, 축사순서에 대한 의전문제, 후원단체로 선정된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 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와의 협조 등등 우리협회의 능력 있는 사무처 직원들과 연구원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막히는 일정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고 드디어 토론회 행사는 시작되었다.

반만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건축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사회자인 조원용 건축사의 서두가 인사말을 하는 황우여 의원을 감동시키고, 전문가들의 수장다운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의 건축문화론이 전개되었다. 예전에 없던 박희태 국회 부의장이 오셔서 토론회의 격이 높아졌고, 부탁드린 축



사에서 "양당의 정책위 의장님들이 오셨으니 양당합의의 법안으로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방망이만 두드리겠다"는 덕담에 토론회의 분위기는 축제의 장으로 고조되었다.

법안작성을 위한 필자의 발제와 보완 성격을 가진 김광현 교수의 발표가 열기를 더했으나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이 법안 작성을 위한 각론적인 요소들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문화에 관련된 원론적인 이야기 위주가 된 점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건축계의 원로이신 원종수 교수께서 객석 발언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의미가 부족했던 예전의 경험담과 아울러 직접적인 건축문화와 진흥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건축사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토론장에 끝까지 참석하여 경청한 황우여 의원은 참석한 건축 관계자들에게 법안 발의의 의지를 확인하여 주었고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그 이후,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은 법안진행 협의와 감사의 의미로 황우여 의원과의 회동을 주선하였고 황우여 의원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난 뒤의 피곤함도 마다한 채 귀국 다음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법안내용과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아직 법안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의된 후에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필자는 국회에서 건축문화 진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도 괄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건축인들의 숙제 하나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말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혹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해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편으로는 발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국가시책에 반영되고 건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건축문화진흥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우리들의 답답한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숨길 수 없음을 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

# 건축문화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전영철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를 표현하는 외형문화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훌륭한 건축물은 국가의 문화적 유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은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통하여 이미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폐허화된 국토의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경제적인 건축물을 빨리 건설해야만 하는 건설위주의 국가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로 인하여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간과되었으며 건축물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실용성과 물량확보 중심의 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건축분야의 설계와 디자인부분에서는 현대건축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건축문화의 요소들 즉, 건축물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보존, 유지관리, 교육, 출판, 강연, 전시 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하여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건축”이라는 단어를 건축법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행위에 대한 정의만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건축은 단순히 행위적 요소이며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우리의 환경이며 문화이다. 기술은 건축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한 부분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건축”이라는 용어부터 “기술과 예술을 적용하여 문화와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정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다.

## 2. 건축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 1) 건축문화의 중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은 행위적인 요소 즉 건설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은 건설과 설계, 감리 모두를 포함한다. 설계는 건축을 도면으로 표현한 것이고 건설은 도면을 형상화 한 것이며 감리는 그 과정을 지켜주는 업무이다. 건설 속에 건

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속에 건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건축을 총괄하는 자격을 국가에서는 “건축사”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은 공통된 제도중의 하나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문, 방송기자들마저도 “설계사”라는 법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그런 현실이다. “설계사”라는 용어 속에는 단지 설계만을 하는 사람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건축을 총괄하는 Master라는 의미는 주지 않겠다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된 큰 책임이 건축인들에게도 있겠지만 분명히 짚을 것은 정부의 건축정책들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건설교통부의 주택국 속에 건축과가 있었음은 정부 관료들이 가졌던 건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6.25 전쟁이후의 폐허화된 전국을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물량위주의 건설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세계속의 한국을 부르짖는 지금까지도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사의 혼(魂)이 들어간 건축물이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계역사의 한 쪽을 장식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캥거루의 나라 호주라는 이미지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나라로 바꾸었으며 시드니가 세계3대 미항의 하나로 자리 잡는데 오페라 하우스가 큰 역할을 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건축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과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학보다는 문화라는 용어가 더욱 어울리며 그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 때 건축물에 대한 무형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 2) 국가 시책변화의 절대적 필요성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문화로 인정하게 된다면 국가가 바라보는 건축의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많은 건축인 들이 건축에 관한 국가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부(部)나 청(廳)을 원하고 있는데 건축인 들마저도 건축문화부나 건축문화청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택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미 없어진 주택국의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면 국가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을 외형적인 가치로 평가 하였지만 건축이 가진 내면적인, 무형적인 무한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 중요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의 무한한 내면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를 지원하는 건축과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때는 건축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각 대학별 최고를 기

록한 적도 있지만 지금의 건축과 사정은 심각한 실정이다. 기존의 “건축사”들을 비롯한 선배 건축인 들의 어려운 모습이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기에 그나마 건축의 원대한 꿈을 꾸던 학생들도 하나 둘 건축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외형적인 가치가 높은 건설위주의 정책보다는 한정된 외형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정책이 되어야 한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술교과서에만 단순하게 수록되어 있는 건축이 미술과 사회교과서에서 폭넓게 서술되어 어린 학생 때부터 건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한다.

훌륭한 건축가의 탄생과 더불어 그 작품들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수많은 세계적 무형재산들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이 되고 국민들의 자긍심 확보에 이바지함을 홍보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

### 3. 건축문화 발전에 역행되는 잘못된 제도

건축과 관련된 법과 제도 중에는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며 건축문화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추첨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계 입찰제도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설계능력과 해당건물의 계획도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입찰제도는 금액만 적어서 평균가격에 가까운 사람이 입찰되는 추첨식 입찰방법으로 설계자가 선택되고 있다.

창작물을 계획하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입찰 방법은 설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설계의 발주형태를 입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정가가 있다면 설계를 바라보는 행정가들의 뒤떨어진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 문제점

설계입찰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건설된 건축물과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하여 좋은 작품을 선정된 후에 그 작품을 건설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시각적, 실용적인 건축물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입찰은 이미 만들어진 내용물을 공개하여 그 물건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을 해야 하는 설계를 입찰에 적용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입찰방법은 현실적으로 설계 능력보다는 운수에 의하여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사가 낙찰 받는 경우가 많아서 훌륭한 건축디자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하청에 의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

입찰로 확정된 설계는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하여 설계의 내용이 검증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대부분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계획 설계 승인을 쉽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훌륭한 건축물의 설계보다는 공무원의 취향과 용역기간 맞추기식 설계가 시행되어 좋은 건축물을 위한 설계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 • 해결방안

설계입찰제도는 극히 작은 규모와 창작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실시 설계인 경우로 지금의 규정보다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제한하고 근본적으로 “현상설계 공모전”의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설계의 적격심사 제도

어느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해당건축물과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규모의 설계를 해 본 설계자에게만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 • 문제점

건축물의 설계는 아이디어 경쟁사업이며 그 평가의 주된 요소가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구성에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나 경력에 있는 자에게만 설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독소적인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재미있는 점은 그 실적이 설계자의 이름으로 설계된 실적이어서 하므로 큰 설계회사에서 훌륭한 건축가를 도우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아서 독립하고자 새로 시작하는 젊고 유능한 신인 건축사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 실적만이 아닌 회사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득권을 가진 대형 업체들만을 위한 대표적 제도라는 점이다.

##### • 해결방안

건축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사무소등록을 한 건축사 모두에게 설계할 기회를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가장 훌륭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만이 건축설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공정한 평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3) 일괄 입찰제도(턴키 공사)의 남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 문제점

설계와 건설을 묶어서 발주하는 일괄입찰제도는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사항의 건축물이나 국가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시급성을 요청받는

공정조건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는데 발주과정이 단순하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부발주공사의 대부분이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건설사의 파트너로 선정된 설계자는 자유로운 창작보다는 건설사의 요청으로 시공하기 편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설계를 하게 되므로 독창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훌륭한 건축물의 설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 해결방안**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 입찰제도(턴키공사)를 지양하고 설계경쟁력 강화와 훌륭한 건축설계작품의 유도를 위하여 “현상설계 공모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정한 뒤에 선정된 작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많은 설계 작가의 경쟁 속에서 선정된 설계작품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우수한 조형미와 독창성으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건축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역사에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4) 민간투자법의 잘못된 건축 관련 시행방법**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축공사 즉, 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군인아파트, 임대아파트, 학교시설 등의 공사는 B.T.L 방식(민간업체가 설계, 시공하여 20년간 관리하며 제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지급하는 건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정부 발주공사는 B.T.L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문제점**

대부분의 정부발주 건축공사를 민간투자법으로 시행, 모두 턴키 식으로 시행되므로 턴키의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업체선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설계점수는 전체 평가의 20~30%정도이며 나머지 70~80%의 평가는 입찰금액 조건과 운영계획 점수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건축물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가의 혼이 담긴 우수한 건축물을 위한 설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해결방안**

박물관 도서관 예술회관 등 예술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현상설계 공모전”에 의하여 선정된 가장 훌륭한 설계 작품을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설계자의 감리 참여가 불가능한 일부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100억 이상 공사의 공공 건축물은 감리전문 회사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다.

**• 문제점**

설계자의 의무적인 참여규정이 없어서 설계자가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이나 설계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 피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 해결방안**

모든 건축물에 설계한 자가 일정부분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조절하여야 한다.

**4. 건축 설계도와 건축물의 저작권**

건축물은 사유재산의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혈을 기울인 설계도의 주된 내용이 고스란히 도둑맞는 상황은 예방되어야 하며 가치가 인정되는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한 건축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기까지의 일정기간만이라도 건축허가, 사업승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르는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훼손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는 설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완공된 건축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하여 공고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훌륭한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독창적 설계를 유도하고 도시의 모습을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구역 내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 디자인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5. '건축문화의 전당' 설립의 필요성**

정부에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더라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건축 문화의 전당'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본부로서 건축연구소, 건축박물관, 전시장, 체험관, 교육관을 비롯한 부속시설 등의 명실상부한 건축과 관련된 업무의 본산지 역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문화의 전당을 총괄하고 각종 건축문화진흥계획 수립과 활동, 재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축문화위원회(가칭)의 법인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건축문화 진흥기금”의 필요성

건축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3)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일정규모 또는 일정용도 건축물의 총공사비의 10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위의 내용 중 3)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4)번 항의 기금 신설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비가 아닌 건축 설계 및 감리비의 일정부분을 선택하여 건축사들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역시 해당되는 단체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설계비와 감리비의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7. 결론

하나의 훌륭한 건축물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 건축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축설계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정책수립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이 세계의 다른 나라 교과서에 수록되어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훌륭한 건축가가 세계 각국 신문의 문화면을 장식하게 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건축문화 진흥 법안이 그 초석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와 조건

김광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1. 건축의 생산 배경

단순하게 말해서 건축을 문화의 한 영역, 한 방향이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저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확장하여 도시를 이루게 만드는 물체이다. 절대로 가두어 둘 수도 없고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한 번 지어지고 나면 싫든 좋든 이 땅 위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건축물인 만큼 우리는 건축과 도시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건축은 매일 매일 우리의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의 문화가 전개되는 곳이다. 바로 이 때문에 건축이 지니는 문화의 전체적 현상을 잘 인식하고 가꾸며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

건축을 문화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건축이 망가지면 근린의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제구실을 못한다. 따라서 건축을 문화로 성숙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수준 그 자체를 가능하는 일이며,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은 건축을 짓기 위해 이를 문화적으로 육성하자는 태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만큼 건축을 문화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주장 자체가 이미 비문화적인 일이다.

건축은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반영하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사회의 문화를 담고 펼쳐며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전수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문화를 새겨 넣는다. 건축은 사람들에 의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국가와 사회적 자산에 있어서 최대공약수인 구조물이다. 건축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리적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보람 있게 만드는 최대의 매개체이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 가장 크게 얽혀 있는 것이며,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최대의 저류이다.

따라서 건축을 문화로 바라보고 싶고 향유하고 싶으며 문화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점, 곧 국민이 나누어 갖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을 깊이 인식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건축문화의 육성이란 건축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고 특이하게 만드는 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건축문화라 하면 건축계의 공연한 치장오만만 알고 있다.

사실 건축은 표면적으로는 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신이 소유한 최대의 자산이요 사적인 재산이고 잘 증식되어야 할 부동산의 가치라는 점에서 매우 사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본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문화의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건축은 정신적 산물이고 사회의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토지와 함께 개발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장치도 된다. 사회에 대하여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구조물, 그것이 바로 건축이다. 따라서 경제와 이윤은 문화에 대치되는 것이고, 정신과 사회적 가치만이 건축문화의 본질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더하여 건축에는 한 두 층짜리 아주 간단한 집에서 수 십 층짜리 거대한 건물에 이르기까지 집의 규모와 그에 따르는 기술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건물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일률적인 질을 가진 모델로 정해지지 않으며, 하나하나가 제각기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문화적 특성이 있다. 혹시 획일적인 것의 대명사로 여기기 쉬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알고 보면 세심한 주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건축물의 수준은 매우 사적으로 정해지기 쉽고, 건축에 비문화적인 요인이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건축은 매우 복합적이다. 건축은 위대한 사상과 필치와 몸동작과 재능을 압축하는 다른 예술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건축이 예술과 문화 반대편에서 있는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학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저급의 기술로도 가능한 것이 건축이고, 세계가 깜짝 놀랄 첨단 기술로만 실현되는 것도 건축이어서, 기술을 하대하는 풍토에서는 건축은 문화 속에 여간해서 제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의 이 다양한 생산 배경으로 인해 건축을 비문화적으로 바라보고, 건축을 기술의 한 부품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너무 자주 대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지는 모르나, 건축을 둘러싼 생활 환경의 수준과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너무나도 낮다. 그런 까닭에 이 나라에는 건축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밝히는 정책이 없다. 건축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고, 건축을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을 통해 공간을 기획하는 공공도 건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건축을 문화정책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건축이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어 그 부분만이라도 문화정책의 하나로 눈여겨보자는 정도의 것이 결코 아니다. 건축이 왜 건축정책으로 건축문화정책으로 구현되고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한 건축이 만들어지는 방식, 곧 건축은 매우 공적인 사회적

산물이자 동시에 매우 사적인 재산이라는 점, 그 수준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건물의 생산 주체가 모두 문화를 의식하고 지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예술의 반대 가치를 갖는 기술을 토대로 성립한다는 점, 그러나 건축은 결과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그 공간 전체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정점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지방 자치체는 건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마도 정부는 건축은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 토지거래와 연동하는 경제적 재산, 광대한 건설기술의 작은 한 갈래, 사는 이의 이윤과 경제적 욕망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민원의 대상, 다채로운 법규로 치밀하게 제한하면 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문화의 한 측면으로 여기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환경을 관광화하거나 역사적 유산을 중심으로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2.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정부와 의회는 건축정책을 왜 세워야 하는가? 그 목적은 공공 기관이 주도하게 될 건축적 골격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정책은 국민의 건축적 자산을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지방 자치체가 독자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지방 건축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건축정책이란 고도의 건축 수준을 얻기 위함이거나, 멋지고 기념적인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설 분야가 더욱 폭넓은 국제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의 건축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건축이 왜 국가의 문화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가?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 마디로 좋은 건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세 번째인 사회권 중 환경권이다.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공기 오염과 같은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쾌적한 건축으로 둘러싸인 생활환경을 소유하는 것이 환경권이다.

핀란드 건축정책은 이러한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건축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은 다소 길지만 중요한 문장이므로 인용하겠다.

“1.2 좋은 환경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환경에 대한 인지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지대해지자 사람과 그 주변의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물리 환경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 권리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환경과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건축정책은 이 권리의 실현을 촉진한다.

의사 결정과 국민 사이의 대화를 위한 순수한 기회는 시민 중심 사회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다. 개방적 의사결정 체계와 사정에 정통하고 적극적인 시민은 이러한 일에 필요하다. 이 과정, 특히 이웃하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특히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에서 시민의 독립적인 행동과 참가는 정부의 전통적 문화를 보완한다.

이러한 사항을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 자치의 의사 결정이 현재 존재하는 건물 자산과 이웃하는 환경의 문화적이며 미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건축은 환경 안에서 사람을 함께 살도록 묶어주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며 과거의 유산과 연결되어 역사를 간직하며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와 같은 건축과 생활환경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환경 속에 살아 있는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건축정책이든 건축문화정책이든 국가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국토, 도시, 지역의 생활환경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축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건축을 만드는 건축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축정책이 왜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가를 이해하려면, 건축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지대함을 인식해야 한다. 건축은 국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축은 결코 문화의 변방이거나 문화의 한 갈래가 아니다. 건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리고 건축은 나아가 고도의 질을 가진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생활환경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축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는 지대하다는 점에서도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국민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의 3분의 2가 건물 속에 있으며, GDP와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축은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

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건축정책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 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 생산력이 건설 분야에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이 건설과 문화라는 두 정책에서 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건축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건축은 낙후되면 한없이 낙후되어 버리지만, 문화의 토양 위에서 가꾸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이요 기술 산업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문화와 건설을 가를 필요가 전혀 없다.

숙고된 건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건축은 국가와 지방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건물과 자연환경이 어울리는 풍경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특히 지방문화 육성은 건축과 도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건축과 도시가 풍족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은 지방 문화가 살아나는 물질적인 기반을 형성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하게 묶는 수단이 된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건축은 국가와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창조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건축문화정책이다.

건축정책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건물들은 국가가 짓고 소유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좋은 건조환경을 소유하고 누리는 권리가 지속되게 하고, 현재의 건조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법령과 지도를 하며, 올바른 건축가가 지역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문화의 한 분야인 건축을 교육하고, 건축에 대한 공공적 인식이 고양되도록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공공이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건축이 창조되도록 건축정책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건축정책은 건축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건축적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다. 또한 건축정책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동체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건축문화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건축은 사적이지만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물이 성립되는 과정을 공공이 관여하고 지도한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건축의 생성 방식에 정부가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선진 각국이 정부가 정책을 모두 만들고 있지 않고 영국의 RIBA나 미국의 AIA 처럼 민간에 맡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선진 국가가 건축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에 맡겨서 운영되어도 좋을 만큼 이미 건축정책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건축은 사적이지만 공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사적 직업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을 주어 역할을 맡기는 이들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자신이 건축물을 통해 사적 이윤을 얻는 전문가가 아니다. 건축가란 누구인가? 건축가는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그렇기에 건축가는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을 관장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윤리 의식이 고양된 자여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건축가가 육성되도록 권장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 3. 건축문화진흥법의 조건

선진 각국은 모두 건축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이미 시행한 지 오래이며, 그것이 그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 건축을 통해 문화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나라의 환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시 당국과 민간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도시와 지방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문화를 생각하고 건축문화진흥법을 생각할 때, 이를 단순히 건축의 미학적 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생활환경을 얻기 위한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질을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건축은 단순한 미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핀란드는 그들의 건축정책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한다. “정부의 건축정책의 목적은 공공 기관에 의한 이후의 수단 제공을 위한 건축적 골격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정부의 건축정책은 우리의 건축적 자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고도의 건축 수준을 향상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설 분야가 더욱 폭넓은 국제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풍토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건축정책 또는 건축문화의 진흥은 공공기관에 의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환경의 성공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도 2000년

도에 발표된 ‘제3차 건축정책’의 골격은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 (architecture is everyone’s concern)’이며, ‘건축은 본질적으로 공공적 작업 (architecture is an intrinsically public affair)’ 이고,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형태 (architecture is an art form that impinges on everyone’s life)’ 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문화진흥법이란 모든 이와 관련된 생활환경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할 건축이라는 공공적 작업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현존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건축문화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건축문화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주는 법안이다. 의회와 정부는 건축과 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정책이요 건축문화정책이다.

- 올바른 건축물은 이 사회에 어떻게 생산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가?
-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자인 건축가는 무엇 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 건축가는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 올바른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에 제출한 아젠더에는 다음과 같은 틀과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 제 1장 총칙

- 목적 : 건축문화 창달 및 건축문화 운동 고양
- 책임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역할 등

#### 제 2장 건축문화 진흥 기반 구축

- 건축정책연구원 설치
- 건축도시센터 설치
- 행정서비스를 위한 건축문화지원센터 설치

#### 제 3장 건축문화 확산

- 공공성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건축문화 이벤트 추진
- 사업성을 위한 건축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 제 4장 건축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 건축문화 진흥기금 조성
- 건축문화 진흥기금 운영

유럽의 선진 각국의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건축문화진흥법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관점은 전반적인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건축정책의 지원을 받는 건축센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공공적 관심사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

'건축정책연구원'은 건축문화를 '건축정책 (architectural policy)이라 는 체계적인 실천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를 연구하고, 국민생활 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건축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건축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 환경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건축제도를 개정하고, 건축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확산, 정착을 실천하며, 세계건축과의 국제 교류를 위한 발진 기지로서 활동한다.

이 '건축정책연구원'의 기능은 ① 건축정책의 지속적 연구, ②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연구, ③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정보망 구축, ④ 건축문화 국제교류, ⑤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⑥ 초중고 건축교과과정 개발, ⑦ 유망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축도시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도시센터'는 주거나 건물들을 단순하게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좋은 건축과 도시환경이 가져오는 효과, 공공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목한 것이다.

'건축도시센터'를 하나로 정의하거나 그 모습을 규정하기 어렵지만, 지역과 국가와 국제 조직과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과 조언 역할을 한다. 나아가서 설계를 공모하고,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축, 도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개토론회 및 협의회 진행하며, 전문가 교육이나 일반인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영국의 건축센터에는 지역, 커뮤니티 및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으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건축센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시센터 (Urban Center)는 도시 내 한 지점에 위치한 하나의 건물을 기반으로 자체 내에 갤러리, 전시장, 교육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며, 지역네트워크 (Regional Network)는 각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연합건축센터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건축도시센터'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건축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장소, 지역 특수적인 성격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 설계와 계획, 문화활동, 예술, 공공예술, 유산보존, 지속적 개

발,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 폭넓은 활동범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센터'는 건축의 경향을 자료화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넘어 일시적 전시나 영구적인 컬렉션, 강연회,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 이벤트 또는 자문역할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기구이다.

'건축도시센터'들은 문화적, 정치적 기관으로서 정책결정자, 디자인 전문가, 대중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36개의 건축센터와 이들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네트워크 'OLA'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들은 일반 대중을 건축과 도시에 관한 토론으로 끌어들이고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및 지역의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전시, 세미나, 연구회, 지역커뮤니티 활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을 촉진시키고 있다. 건축문화진흥법이 반드시 연구하고 답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영국은 네덜란드와는 달리 정부차원의 건축정책 대신에, 민간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기관은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인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로서, 건축도서관, 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 각종 문화프로그램, 전시, 토론, 공모전, 미디어, 커뮤니티 사업, 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건축이 경제, 커뮤니티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12개 지역에 각각의 프로그램과 건축센터를 독자적 운영하면서 지역성에 맞는 건축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정하는 건축가가 국가 프로젝트 설계의 질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건축가가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건축의 전체적인 질을 보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정부의 각 부처는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공공 건축물을 가질 수 있도록 진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복합 건축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겐 건축 아카이브(archive), 도서관, 전시관, 연구시설, 출판사 및 저널, 건축문화교육, 국제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건축도서, 모형, 도면 등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접근성을 촉진하고 아카이브 연구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광범위한 아카이브를 통해 도서 연구의 깊이를 촉진하게 한다. 이와 함께 건축 관련 이벤트, 전시회, 출판, 건축공모전 등의 활동과 특히 건축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건축 관계자들이 양질의 건축을 만들어내도록 인식을 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축문화진흥기금의 조성은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기관, 시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과 도시의 환경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은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건축정책연구원의 지원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건축문화 정립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전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를 문화산업화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축가와 건설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두뇌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가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적 건축과 도시문화 프로그램 유치만이 아니라, 한국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전시회, 문헌 발간, 세계와 아시아 속의 건축문화 중심기지 설립을 위한 건축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피부에 닿고 건축과 도시를 통해 바람직한 균형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건축도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중고 "건축과 도시문화" 교과서 개발과, 방송통신대학과 교육방송의 건축문화강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인 건축문화 교류에 사용된다. 또한 국가를 대표할 건축가는 국가적 지원에 의한 얻어지는 것이므로, '건축문화진흥기금'을 통해 고도로 우수한 건축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우수 신진건축가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유망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자랑스러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국토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향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세계화하는 한국건축문화를 정립하며, 문화의 최고봉인 건축을 통해 건축설계산업과 건설기술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며, 범국민 건축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제안한 '건축도시센터' 등을 통해 건축물이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이라는 측면을 지속화하기 위한 건축설계경기의 품격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관리, 지도를 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가 갱신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건축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제 건축 비엔날레를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디자인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집합시키고, 한국 관련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촉진시키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며, 지식과 토론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졸업 후 4년 이내인 신진 및 기성 건축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신인 건축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건축가들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응용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장학제도, 연구, 여행, 국내, 국외 출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적 육성책을 통해 젊은 건

축가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갈 유능한 건축가들을 키워 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진흥법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보기에 익숙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율아매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국가적 현상설계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통해 공공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국가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2005년도 한국건축문화포럼 세미나